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총액인건비정원제 시행으로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쇠퇴 분야를 축소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선 4기 시정비전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부 본부·팀제 도입 등 기구개편에 따라 과단위 조직에 “단”, “팀”, “실”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고,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 함(안 제5조, 제8조 및 제12조).
- 다. 경제과학국 업무중 기업지원업무의 일부와 국제통상업무를 신설되는 “투자통상본부”로 이관함(안 제7조).
- 라. “투자통상본부”에 투자유치, 기업지원 및 국제통상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안 제8조).
- 마. 사적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함(안 제10조).
- 바. “보건복지여성국”에 문화체육국의 업무중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함(안 제11조).
- 사. “환경녹지국”에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중 하천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함(안 제12조).
- 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부서로 이관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자.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장제1절).
- 차. 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장제7절).
- 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분리함(안 제4장제9절 및 제10절).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협의 : 관계부서와 협의완료
- 다.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6년 10월 17일 ~ 10월 27일 (10일간)
/ 접수의견 6건(반영 5건, 미반영 1건) / 세부내용 별첨
 - (3) 조직개편 주요내용 : 별첨

행정기구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

제출자 (부서)	의견접수 내용	검 토 결 과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및 동학농민혁명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 “화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가지 업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화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반영」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직제순위 조정 및 과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문화재과 ▶ 향토문화유산관리사무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소장, 2담당(문화유적관리, 박물관운영) ※ 사업소장 : 행정5급 또는 학예연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중앙부처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임을 감안 과 직제순위 조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과/체육지원과/관광문화재과 ※ 과 명칭은 체육지원과로 유지 ▶ 관광문화재과에 향토사료관 존치 「미반영」
양성평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명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에게 익숙해진 국 명칭으로 기존명칭 유지 「반영」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건설방재국 사무분장 자구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균형개발 및 정비사업과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건설산업 진흥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설치조례상 사무분장 자구수정 「반영」
지방공무원 교 육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 “대전광역시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에 지방공무원의 의미 내포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명칭 타당 「반영」

〈조직개편 주요내용〉

- ▶ 실·국 : 1실 7국 1단 1본부(10) → 1실 7국 2본부로 개편(10)
- ▶ 과 : 3관 5담당관 34과(42) → 3관 4담당관 1단 1실 31과 4팀으로 개편(44)

○ 기구조정 현황

실·국·사업소별	현 재	조 정 내 용	조정후
합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본부 신설, 1단 폐지 < 2과(단위) 중 ⇒ 중(6) : 4팀, 1단 1실 / 감(4) : 1담당관, 3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팀 신설 : 정책프로젝트팀 	1팀
기획관리실	1관 5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담당관 폐지 : 경영행정담당관 	1관 4담당관
경제과학국	5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 신설 : 대덕특구지원과 • 2과 폐지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4과
(신설) 투자통상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팀 신설 :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국제통상팀 	3팀
자치행정국	5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 폐지 : 행정지원과 • 1과, 1실 신설 : 인력개발과, 시민봉사실 	5과1실
환경녹지국	4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신설 : 생태하천사업단 	4과1단
도시건설방재국	5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 신설 : 도시균형개발과 • 1과 폐지 : 건설재해복구과 	5과
(폐지) 도시환경개선 사업단	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과 폐지 : 광역교통정비과, 생태도시조성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1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 분리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사업소
(폐지) 사적지관리사무소	1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업소 폐지 	-

○ 부서명칭 변경 현황 (1국, 14과, 1직속기관, 1사업소)

< 국 > 환경국 ⇒ 환경녹지국

< 과 >

- 기획관리실 : 혁신분권담당관 ⇒ 혁신경영담당관, 법무담당관 ⇒ 법무통계담당관
- 경제과학국 : 과학기술과 ⇒ 과학산업과, 농정과 ⇒ 농업유통과
- 자치행정국 : 회계과 ⇒ 회계계약과, 지적과 ⇒ 토지정보과
- 문화체육국 : 체육청소년과 ⇒ 체육지원과, 관광과 ⇒ 관광문화재과
- 보건복지여성국 : 양성평등과 ⇒ 여성가족청소년과
- 환경녹지국 : 공원녹지과 ⇒ 푸른도시과,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 교통국 : 주차관리과 ⇒ 운송주차관리과
- 도시건설방재국 : 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방재과
- 소방본부 : 방호구조과 ⇒ 대응구조과

< 직속기관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 사업소 > 공원관리사무소 ⇒ 공원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담당관·과장·단장·팀장·실장의 직급과 직속 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과 등의 설치)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과·단·팀·실·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본 청

제4조(부시장) ①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둔다.

②행정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③ 정무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과학국·투자통상본부·자치행정국·문화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교통국·도시건설방재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의회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 시책개발 및 행정의 경영혁신·자치구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 사업·공기업·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분권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8. 국가균형발전관련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9.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행정의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1. 자치법규·행정심판·소송 및 통계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과학국) 경제과학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 소비자보호, 유통, 물가안정, 에너지관리,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과학협력, 지식산업육성, 전략산업 및 첨단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동에 관한 사항

5. 농·축·수산물에 관한 사항

제8조(투자통상본부) 투자통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업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협력,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견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및 여론에 관한 사항

4. 대전사랑운동 등 애향운동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6. 공무원교육, 인사, 채용, 공무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8. 회계·계약, 물품(차량 포함)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0. 국·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 콜센터 운영 및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단지조성 등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3. 예술진흥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 문화재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및 가정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6. 보건·위생·의무·약무·방역·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지하수에 관한 사항
3. 푸른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원, 유원지, 동·식물원에 관한 사항
5. 폐기물·분뇨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개발 등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
2. 버스·택시·화물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 및 주차장시설에 관한 사항
4. 운송물류 및 교통·차량·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교량·지하도·가로등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시건설방재국)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진흥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균형개발 및 도시정비사업과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고속철도변 정비에 관한 사항
8. 민방위·비상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난방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방재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12. 주택건설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경계 및 진압·조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 등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5. 종합상황실 운영
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속기관

제 1 절 공무원교육원

제1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5-5번지에 둔다.

제17조(원장)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피교육자 차출·등록 및 학적관리
3. 교육과목 및 교재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 2 절 보건환경연구원

제19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1-1번지에 둔다.

제20조(원장)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검사 및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②「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 3 절 농업기술센터

제22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0-2번지에 둔다.

제23조(소장)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축산기술 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절 소 방 서

제25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둔다.

②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진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특별경계·소방순찰 및 방화계몽 지도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7.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사 업 소

제 1 절 상수도사업본부

제29조(설치) ①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13번지에 둔다.

제30조(본부장)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원수개발
2. 취·정수 및 송·배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급수공사비·시설분담금·제수수료의 부과·징수
6. 그 밖에 시민급수에 관한 사항

제32조(하부기관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정수사업소·수도기술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별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 2 절 건설관리본부

제33조(설치) ①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설비공사 및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를 둔다.

②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에 둔다.

제34조(본부장)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로 · 교량 · 육교 · 지하도 공사의 설계 · 시공감독
2. 문화 · 복지시설 및 체육 · 위락시설 공사의 설계 · 시공감독
3.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4. 도로 · 교량 · 차도육교 · 터널의 유지 및 수선
5. 도로부속물(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 및 수선
6. 도로 · 교량 · 차도육교 · 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
7. 건설자재시험
8. 과적차량단속
9. 건설기계 운영 · 관리
10. 도로 · 교량 · 차도육교 · 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 사항 즉시처리
11.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 3 절 지하철건설본부

제36조(설치) ①지하철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번지에 둔다.

제37조(본부장)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38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하철 건설업무의 기획 · 조정
2. 지하철건설 기본조사 ·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3. 지하철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4. 지하철 용역업무에 관한 사항

5. 지하철 건설관련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철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절 시립미술관

- 제39조(설치) ①시민의 미술문화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두고, 미술관 밑에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을 설치한다.
- ②미술관 및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번지에 둔다.

제40조(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부 및 지방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발굴, 창작활동 지원업무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절 한밭도서관

- 제42조(설치) ①도서 및 기타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도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45-3번지에 둔다.

제43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5.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
6. 그 밖에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절 여 성 회 관

제45조(설치) ①여성의 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과 부녀자 상담 및 부녀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여성회관을 두고, 대전광역시여성회관 밑에 대전광역시여성문화회관을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여성회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84-21번지에 두고, 대전광역시여성문화회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439-4번지에 둔다.

제46조(관장) 대전광역시여성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4.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
5.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
6. 전통혼례실 운영
7. 저소득층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8. 요보호 여성의 계몽지도 및 직업알선
9. 여성의 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업무
10.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지도에 관한 업무
11. 아동의 상담·일시보호 및 귀가조치

12.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조사, 입양 및 위탁업무
13.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 7 절 공원관리사업소

제48조(설치) ①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1-4번지에 둔다.

제49조(소장)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원내 시설의 유지관리
2.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3. 공원내 식물원·동물원의 관리운영
4. 공원미화에 관한 사항

제 8 절 서울사무소

제51조(설치) ①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유치와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및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2조(소장)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사무연락·조정
2. 중앙행정기관의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시가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중앙행정기관 반영
3.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4.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5. 시정 및 관광홍보자료 제공
6. 대전출신 출향인사와 업무협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제 9 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54조(설치)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66번지에 둔다.

제55조(소장)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감독
2. 중도매인 및 산지 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
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징수
5.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 도매시장안의 유사 도매업자 단속

제 10 절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57조(설치)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번지에 둔다.

제58조(소장)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감독
2. 중도매인 및 산지 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
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징수
5.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 도매시장안의 유사 도매업자 단속

제 11 절 만인산푸른학습원

제60조(설치) ①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학습과 산림체험을 통하여 인간성 배양과 자아실현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을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산47-4번지에 둔다.

제61조(원장)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휴양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 산림자원 조성 및 육림관리
3. 휴게소 및 주차장 운영관리
4. 휴양림 이용자 편의도모 및 지도·단속
5.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6. 자연환경 학습 및 산림체험에 관한 교육
7.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과 자아실현기법 강좌
8. 시설 사용료 및 연수비용 등의 징수
9. 그 밖에 자연보호, 나무사랑에 관한 시민연수

제 12 절 차량등록사업소

제63조(설치) ①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62-1번지에 두고,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70번지에 둔다.

제64조(소장)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제 13 절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제66조(설치) ①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259번지에 둔다.

제67조(소장)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운영
2. 휴양림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관리
3. 휴양림안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도모 및 지도단속
4.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등 재난방지 및 복구
5. 입장료·주차료 및 숲속의 집 등 시설사용료 징수
6. 휴양림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점·사용허가
7. 자연학습, 산림체험교육 및 숲 해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휴양림 및 휴양림안의 시설물 관련 사항

제 14 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제69조(설치) ①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번지에 둔다.

제70조(관장) 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공연·대관(공연장 및 연습실)·교육
3. 공연예술의 활동·보급,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
4. 국내·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 공연예술 공동제작사업
5. 그 밖에 예술의전당 설치목적 관련 사항

제 15 절 하천관리사업소

제72조(설치) ①³대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에 둔다.

제73조(소장)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치수안정사업 추진
2. 생태하천조성·관리 및 하천오염방지
3. 잔디포, 초지, 꽃단지 조성·관리
4. 시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확충·관리
5. 그 밖에 ³대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6 절 수목원관리사업소

제15조(설치) ①도심안의 생물 서식공간확보 및 학술적·환경교육적 기능 수행과 시민휴게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확충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수목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수목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번지에 둔다.
제16조(소장) 대전광역시수목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목원 및 전시림의 조성·관리
2. 수목 및 초화의 시험·연구·개발·보급
3. 수목의 병충해 및 공해의 예방·조사·연구
4. 녹화용 수목 및 초화의 생산·공급
5. 도시조경 및 종묘에 대한 알선 및 기술지도
6. 둔산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둔산대공원 수목의 식재·관리
8. 그 밖에 둔산대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제 17 절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제18조(설치) ①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연구·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설치한다.

②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27번지에 둔다.

제19조(관장)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공공집회에 관한 사무
2.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 및 육성
3. 고전음악에 관한 연구 및 교육
4.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열람 및 악기전시
5.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제 18 절 대전선사박물관

제81조(설치) ①노은선사유적지의 보호 및 보수·관리와 소장품의 보관·보존 및 전시 등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선사박물관을 설치한다.

②대전선사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20번지에 둔다.

제82조(관장) 대전선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자료와 향토사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소장품의 보관·보존 및 전시
3. 박물관 및 향토사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5.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 등
6. 사회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보관, 감사관, 정책프로젝트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공기업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중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과학국, 투자통상본부,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②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제4조제5항 관련)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비고
문화체육국	1.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대전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3. 대전관광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무 4. 대전관광사진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여성국	1.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3. 가출청소년긴급구난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쉼터(남·여)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드림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8.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여성회관	요보호 여성·아동 상담 등에 관한 사무	

③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경제과학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건설주택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경제과학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경제과학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경제과학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제과학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을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⑬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단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 부 소방서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2동 3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중 : 원동, 인동, 효동, 천동, 가오동, 신흥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신안동, 소제동, 가양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중동,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하소동 일원 • 중구 중 : 은행동, 선화동, 대홍동, 목동, 중촌동, 문창동, 석교동, 육계동, 호동, 부사동 일원
서 부 소방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3-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중 : 태평동 일원 • 서구 중 : 갈마동, 괴정동, 내동, 가장동, 탄방동, 삼천동, 용문동, 월평동, 만년동, 둔산동 일원
동 부 소방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3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중 : 홍도동, 용전동 일원 • 대덕구 일원
북 부 소방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구 중 : 도룡동, 원춘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자운동, 신성동, 가정동, 구성동, 덕진동, 추목동, 신봉동, 문지동, 전민동, 탑립동, 용산동, 관평동, 송강동, 봉산동, 금고동, 신동, 대동, 금탄동, 구룡동, 구암동, 봉명동, 덕명동, 상대동, 원신흥동, 복룡동, 장대동, 노은동, 갑동, 학하동, 궁동, 어은동, 죽동, 지족동, 반석동, 안산동, 외삼동, 수남동, 하기동 일원
남 부 소방서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9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중 : 문화동, 대사동, 용두동, 오류동, 유천동, 산성동, 사정동, 안영동, 무수동, 구완동, 침산동, 목달동, 어남동, 정생동, 금동 일원 • 서구 중 :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변동,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매노동, 산직동, 장안동, 평촌동, 오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괴곡동, 흑석동, 일원 • 유성구 중 : 원내동, 교촌동, 대정동, 용계동, 계산동, 성북동, 세동, 송정동, 방동 일원

[별표 2]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2조 관련)

1.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0-1	대전광역시 일원의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중리취수장

2. 정수사업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36-3	송촌정수장, 회덕정수장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1	월평정수장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64	삼정취수장

3. 지역사업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중부사업소 서부사업소 유성사업소 대덕사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18-9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4-19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27-5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90-19	대전광역시 동구일원 대전광역시 중구일원 대전광역시 서구일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일원

4. 수도기술연구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기술연구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36-3	대전광역시 일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6년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6년 11월 7일
3. 상정일자 :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4)
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 김춘겸)

1. 제안이유

총액인건비정원제 시행으로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쇠퇴 분야를 축소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선 4기 시정비전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부 본부·팀제 도입 등 기구개편에 따라 과단위 조직에 “단”, “팀”, “실”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고,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제8조 및 제12조).
- 다. 경제과학국 업무중 기업지원업무의 일부와 국제통상업무를 신설되는 “투자통상본부”로 이관함(안 제7조).
- 라. “투자통상본부”에 투자유치, 기업지원 및 국제통상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안 제8조).
- 마. 사적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함(안 제10조).
- 바. “보건복지여성국”에 문화체육국의 업무중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함(안 제11조).
- 사. “환경녹지국”에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중 하천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함(안 제12조).
- 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부서로 이관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자.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장제1절).
- 차. 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장제7절).
- 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분리함(안 제4장 제9절 및 제10절).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한봉전)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행정기구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장 총칙에서 목적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과 담당관·과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조례 안 제2장에서는 부시장 등 본청의 기구를, 조례 안 제3장에서는 공무원교육원 등 직속기관 기구를, 조례 안 제4장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사업소 기구의 설치 등 제4장 제8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전부개정 조례 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민선 4기 시정비전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신설 된지 2년여 만에 폐지 또는 분리되는 조직이 발생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중앙부처와 담당부서가 상이한 자원봉사, 하천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 향후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등을,

행정부시장 밑에 정책프로젝트팀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조직과의 중복 및 조직위의 조직이 될 우려성을,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시립박물관 건립 준비 등을 위하여는 향토사료관과 선사박물관을 통합한 별도조직으로 설치하는 것 등을,

제4장 사업소의 명칭이 사업소와 사무소로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무소로 통일하는 것을,

여성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기관의 장이 아닌 기관 밑에 기관을 설치한 것 등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내용별첨)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3
----------	----

제안연월일 : 2006. 12.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사업소 중 기관의 장 밑에 하부기관을 설치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립미술관,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의 밑에 설치하는 기관을 사업소장 밑에 설치하도록 함.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조례안 제39조제1항중 “미술관 밑에”를“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 밑에”로 한다.

조례안 제45조제1항중 “대전광역시여성회관 밑에”를“대전광역시여성회관장 밑에”로 한다.

조례안 제63조제1항중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를“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밑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39조(설치) ① 시민의 미술문화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두고, 미술관 밑에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45조(설치) 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과 부녀자 상담 및 부녀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여성회관을 두고, 대전광역시여성문화회관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63조(설치) ①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39조(설치) ① 시민의 미술문화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두고, <u>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u> 밑에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45조(설치) 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과 부녀자 상담 및 부녀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여성회관을 두고, <u>대전광역시여성회관장</u> 밑에 대전광역시여성문화회관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63조(설치) ①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두고, <u>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u>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